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(역삼동)
동훈타워 12층
[별지 제20호서식]

(전화) 02-3016-9508
(팩스) 02-564-0278

증서 2018년 제 478 호

정 본

공 정 증 서
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(역삼동)
동훈타워 12층
[별지 제25호서식]

(전화) 02-3018-9508
(팩스) 02-561-0278

증서 2018 년 제 478호

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

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. ----------

제 1 조(목적) 채권자는 2018년 06월 05일 ---------- 금 사억팔천만(₩480,000,000) ---------- 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. ----------

제 2 조(변제기한과 방법) 채무자는 위 채무금을 2019년 01월 05일까지 일시변제하기로 한다. ----------

---

제 3 조(이자) 이자는 연 18%로 한다. ----------

제 4 조(변제의 장소) 채무의 변제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. ----------

제 5 조(지연손해금)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4%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. ----------

제 6 조(기한 이익의 상실)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. ----------

1.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, 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----------
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(역삼동)
동훈타워 12층
(전화) 02-3016-9508
(팩스) 02-561-0278
[별지 제25의2호서식]

2. 채무자가 거래은행으로 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때. ----------

3. 채무자가 차용금 및 이자의 지급을 1회 이상---------- 지체한 때

제 7 조(위와 같다)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 청구에 따라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 하여야 한다. ----------

1.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, 가압류,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. --

2. 채무자가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때. ----------

3. 채무자가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한 때. ----------

제 8 조(연대채무)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.----------

제 9 조(강제집행의 인낙) 채무자들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-----

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.----------

210mm X 297mm
보존용지(1종) 70g/㎡
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(역삼동)
동훈타워 12층
[별지 제21호서식]

(전화) 02-3016-9508
(팩스) 02-564-0278

관 계 자 의 표 시

관 계 (촉탁인) 채 권 자----------

성 명 (명 칭) 주식회사 바른크라우드대부 대표이사 안재영----------

주 소 (소재지)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28, 10층 (역삼동, 아비스타 알앤드디센터)---

직업 ---------- 주민등록번호 110111-6222767--

관 계 (촉탁인) 채 무 자----------

성 명 (명 칭) 전 희 선----------

주 소 (소재지)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44길 21

직업 ----------

관 계 (촉탁인) 채무자의 대리인 겸 채무자----------

성 명 (명 칭) 송 정 의----------

주 소 (소재지)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44길 21

직업 ----------

관 계 (촉탁인) ----------

성 명 (명 칭) ----------

주 소 (소재지) ----------

직업 ---------- 주민등록번호 ----------
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(역삼동)
동훈타워 12층
[별지 제32호서식]
(전화) 02-3016-9508
(팩스) 02-564-0278

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들이 ----------

제시한 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.

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.

본 공증인은 이 증서를 열석자들에게 읽어주고, 열람시켰던바 열석자들이 이 증서의 작성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날인 하였다.----------

채권자의 대리인 권 유 미 인

채무자의 대리인 겸 채무자 송 정 의 인

이 증서는 2018년 06월 14일 이 사무소에서 작성하였다.----------

같은날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들의 청구에 의하여 정본은 채권자의 대리인 에게 등본은 채무자의 대리인 겸 채무자 송정의---------- 에게 각 1통씩 교부한바, 각자 이를 수령하였다. ----------

---
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(역삼동)
동훈타워 12층
[별지 제12호서식]

(전화) 02-3016-9508
(팩스) 02-564-0278

증서 2018 년 제 478호

2018년 06월 14일

공증사무소명칭	**법무법인(유한) 대륙아주**
소 속	서울중앙지방검찰청
소재지표시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(역삼동) 동훈타워 12층
공증인	**공증담당변호사** 정 진 규 (인)

210mm X 297mm
보존용지(1종) 70g/㎡
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(역삼동)
동훈타워 12층
[별지 제12호서식]

(전화) 02-3016-9508
(팩스) 02-564-0278

증서 2018 년 제 478호

위는 정본입니다.

2018년 06월 14일

공증사무소명칭	**법무법인(유한) 대륙아주**
소 속	서울중앙지방검찰청
소재지표시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(역삼동) 동훈타워 12층
공증인	**공증담당변호사**

210mm X 297mm
보존용지(1종) 70g/㎡